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유망사업

(한국



I.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한 광역경쟁력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이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면적,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여 투입 대비 효과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공서비스 공급능력(criticalthreshold)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인력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 · 협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 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여 투입 대비 효과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공서비스 공급능력(criticalthreshold)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인력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 · 협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왔다. 이미 2010년 1월 2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신규사업 5개항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하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신규사업 5개항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하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신규사업 5개항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하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신규사업 5개항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하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1,200	1,500	1,800	1,200
광역경제권사업	500	600	700	500
기초생활권사업	300	400	500	300
초광역개발권사업	200	300	400	200

